**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 2 조(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도로·공원·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지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 2 조(불균일과세) ·····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종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 2 조(과세면제) ①구세의 과세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br>1. 사업소세<br>마을공동경영사업장<br>2.—3.(생략)<br>②(생략) | 제 2 조(과세면제) ① ·····<br>(삭제)<br>1.—2.(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br>②(현행과 같음) |